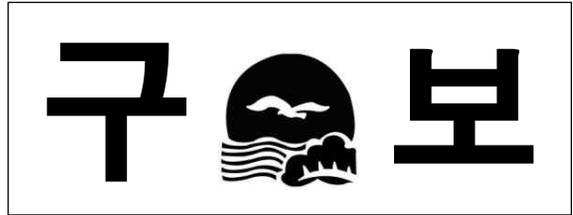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181 호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2-141호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3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141호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 요 내 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제9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2층
인천광역시 중구청 안전관리과(안전관리팀)
- ▷ 전 화 : 032-760 - 7802 [FAX 032-760 - 7809]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2.

제출자 : 안전관리과장

1. 제안이유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제5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심사
 - 다. 입법예고 :
 -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필수) :
 - 부패영향평가(필수) :
 - 성별영향평가(필수) :
- ※ 지방보조금 및 물가대책 심의 등 필요 시 진행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해지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 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 등 모든 규정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3. 구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6.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
-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살예방, 교통안전, 범죄예방, 학교안전, 관광레저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 2. 안전도시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일 : 2021.06.23.)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2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시행일 : 2019.10.04.)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재생국장 <개정 2019. 9. 30.>
2.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3.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
4. 구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5.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7.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